

「NH-CLEAN-DNA」 확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발표순서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의의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위반행위 신고·처리
- ◆ 신고자 보호·보상

3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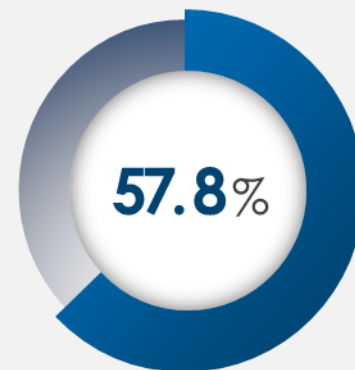
- 2010 ~ 2011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무죄 판결(대가성 없음)
- 2012. 8. 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최초 발의
- 2013. 8. 5.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내수 경기 위축 우려로 심사 지연)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 2014. 4. 16. 세월호 참사 -> 관피아 논란
- 2015. 1. 7. 국회 정무위원회(이해충돌방지 삭제, 사립학교 · 언론사 포함)
- 2015. 3. 3.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 5. 9.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제정안 발표(3 5 10)
- 2016. 7. 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2016. 9. 28. 법률 시행 예정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 담보상태인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 된 상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선의를 공직자등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를 공직자등 피해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 예정**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를 공직자등 보호**



법률 적용대상

적용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자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농협 임직원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중양회 임직원

- ✓ 중양회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 ➡ 적용

※ 농민신문사(언론사), 농협대학(사립학교법인)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 ➡ 적용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

- ✓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 농·축협, 계열사 임직원 중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는 경우는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적용
예) 농식품부 위탁업무(수급조절, 보조금 등), 정책금융 등

● 공무수행사인(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중앙회내 위원회의 문제 -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
- 계약에 의한 위탁의 문제 - 논란의 소지 잔존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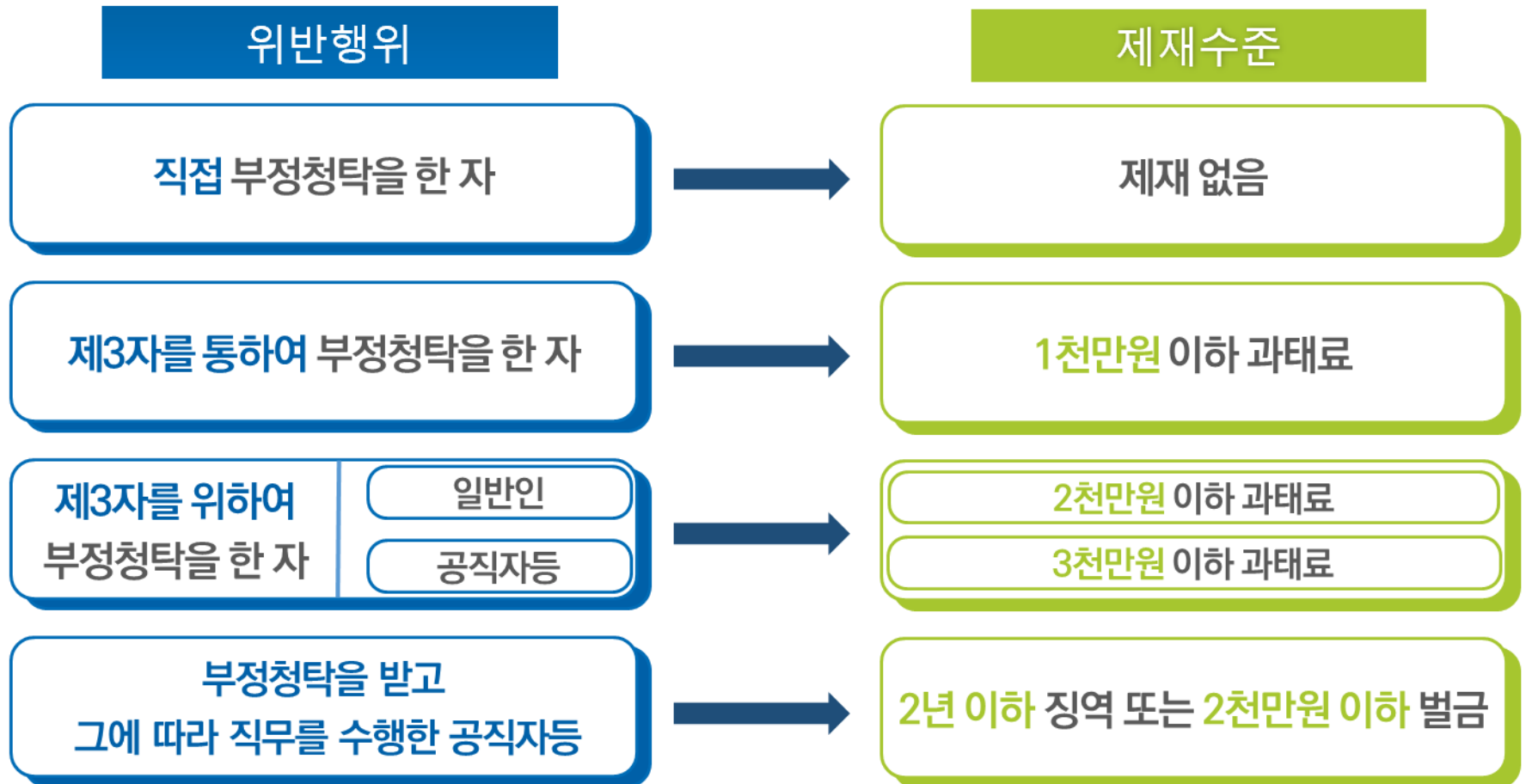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위반행위자가공직자등인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벌칙과징계병과)



사례 1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00농협 직원 A가 중앙부처 감사를 받던 중 본인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이를 무마하고자,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B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발한 사무관 C에게 위반 사항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함

- * 사무관 C가 부정청탁을 거절한 경우에도 직원 A가 부정청탁을 한 행위는 제재대상임
- * 00농협 직원 A가 직접 감사담당 사무관 C에게 자신의 위반사항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A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단, 직접 청탁하는 경우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는 해당되며,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
- ☞ 00농협 직원 A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중앙부처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사무관 C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사례 2 공무수행 관련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농협 00계열사 직원 A가 00농협 조합장 B에게 농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본인 소속 계열사 제품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받아주도록 청탁함

- * 조합장 B는 일반적인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내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은 가능)
- * 다만, 조합장 B의 직무(농자재 구매)가 정부에서 위탁 또는 위임한 업무인 경우에는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 (즉, 청탁금지법 전면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조합장 B가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 ☞ 00계열사 직원 A는 제3자(계열사)를 위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00농협 조합장 B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사례 3 국회의원에게 농협법 개정을 요청한 경우

00농협 직원 A가 국회의원 B에게 농협의 고충 해결을 위해 농협법 개정
힘써줄 것을 요청함

- *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되어 위반 사항이 아님
- * 국회의원인 경우 위 사례와 같은 부정청탁 예외사유가 적용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

사례 4 본인의 보증신청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요청한 경우

농신보 신용보증 신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농협 직원에게 본인의 보증신청에 대한 처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경우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도 법상 예외사유로 하고 있음
- * 따라서 위 사례처럼 보증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사례 5 계통임직원으로부터 감사관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중앙회 조감처 직원 A가 00농협 감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 사항의 행위자인 00농협 직원 B로부터 적발 사실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 받고 거절하였으나, B의 지인인 △△농협 조합장 C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음

- * 특정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중앙회 직원 A는 기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대상 아님 (단, 미신고 시 징계 대상, 부정청탁을 받은 대로 업무 처리 시 형사처벌 대상)
- ☞ 00농협 직원 B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농협 조합장 C는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사례 6 법인의 업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00농협 직원 A가 00농협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00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에게 청탁함

- * 청탁이 법인(00농협)을 위한 것이고, 그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 직원 A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공무원 B가 청탁 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 00농협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단,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금품등 수수 금지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의 금지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	無			처벌 X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법)
	有	대가성	無	과태료(부정청탁법)	
			有	뇌물죄(형법) OR 과태료(부정청탁법)	
					뇌물죄(형법)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사례 7 공직자등에게 골프회원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00농협 직원 A와 B는 직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공무원 C, D와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00농협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예약하였고, 함께 골프를 친 후 비용은 각자 나누어 계산함 (각 5만원)

- * 금전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골프 접대 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며,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비용은 각자 나누어 계산하였으나 농협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이용금액 우대혜택을 제공받았고, 이는 우대받은 금액만큼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위반행위에 해당됨
 - ☞ 농협 직원 A,B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공무원 C,D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8 동일 목적으로 다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00농협이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데 해당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교수 A가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임원 B는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보내고,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함

- * 농협 임원 B, 직원 C, 직원D가 제공한 양주, 상품권, 식사 of 출처는 00농협이므로 평가위원인 교수 A는 동일인으로부터 모두 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 됨
- * 동일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인 교수 A가 농협 임원, 직원들로부터 선물 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목적에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 교수 A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 농협 임원 B와 직원 C,D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9 금품등 가액의 산정 기준

농협 직원 A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류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5만원에 구입하여 언론보도 추진을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선물함

-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됨
(단,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됨)
- * 농협 직원 A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고, 이는 시가 30만원 상당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수수 금지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가액 규정내용 - 동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금품등의 종류

-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 (5만원 이내)

사례 10 예금 우수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00농협에서 예금 우수고객 사은품(10만원 상당)을 보냈는데, 고객 중에 공직자 등이 포함된 경우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제재대상이 아니며, 위 사례는 예외 사유 중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단, 특정 공직자등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우수고객 기준을 해당 공직자에게만 다르게 적용하거나, 그 공직자등에게만 특별히 좋은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11 중앙부처 감사 중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00농협 임원 A와 직원 B는 중앙부처 감사를 받던 중 담당 공무원 C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함

- * 위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액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고, 특히 감사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 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
- * 또한, 허용가액 범위 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수경위와 시기,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12 계통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중앙회 조감처 소속 감사 담당 직원 A가 00농협 감사 중에 00농협 임직원 B, C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용 총 9만원을 B가 계산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라는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 위 사례는 감사 중에 감사대상 농협 임직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허용가액 이하로 수수한 경우이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13 허용가액 이내로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농협 예산 담당 직원 A가 관련 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담당 공무원 B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5만원을 계산(법인카드)하였고, 이어서 직원 A의 팀장 C가 공무원 B와 술을 마시고 술값 6만원을 계산함(법인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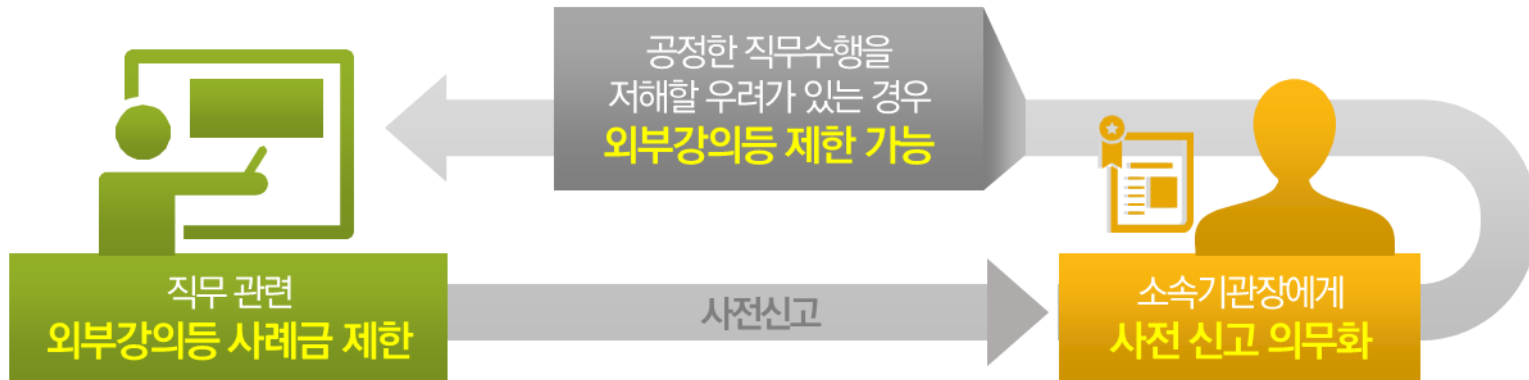
- * 직원 A가 식사 제공, 팀장 C가 2차로 술을 제공하여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지급 출처가 동일(농협 예산)하여 동일인의 1회 제공으로 평가 가능
- *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무원 B는 식사비용 2만5천원, 술값 3만원, 합산 5만5천원 상당의 접대를 받음
 - ☞ 농협 직원 A와 팀장 C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지자체 공무원 B는 직무관련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14 경조사에 화환을 별도로 제공한 경우

농협 홍보담당 직원 A는 언론 기자 B의 모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냈고, 5만원 상당의 화환을 별도로 보냄



- * 시행령에서는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하고 있음
- * 직원 A는 경조사비·화환을 합해 15만원을 제공하여 가액 기준 초과 제재대상임
- * 참고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는 5만원임



[사례금 상한액 (공직유관단체)]

(단위 : 만원/시간)

구분	기관장	임원	직원
상한액	40	30	20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15 공직자등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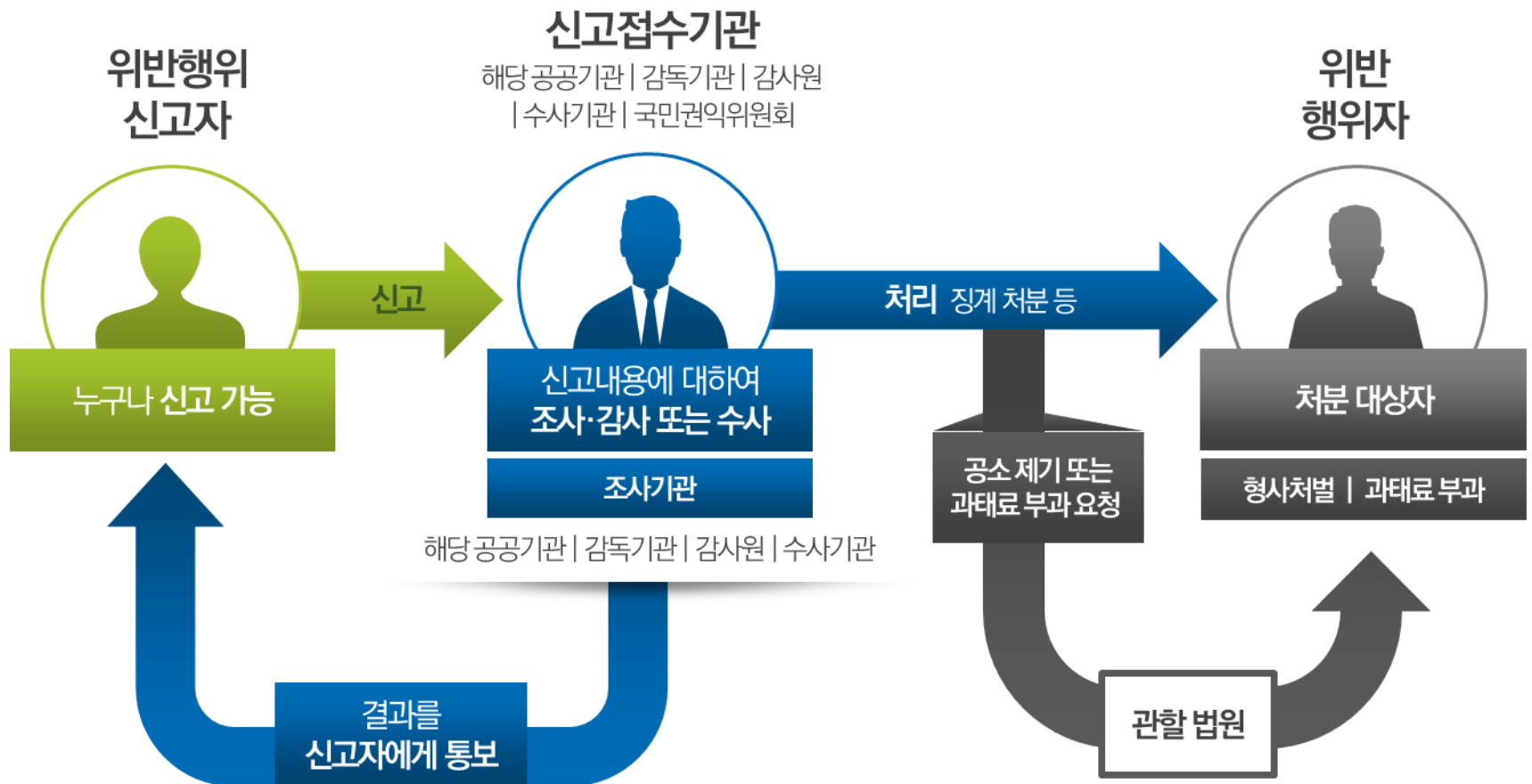
농협 00부서 직무교육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박사 A를 초청하여 강의(2시간)를 진행하였고, 강의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함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직원인 박사 A는 동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공직유관단체 확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고시내용으로 확인)
- * 박사 A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2시간의 경우 30만원이 상한선임
- * 박사 A는 초과한 사례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인 농협에 반환해야 함
 - ☞ 신고 및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박사 A는 과태료 부과 대상
 - ☞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 지급한 자(농협)는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행위 신고·처리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신고자 보호·보상

2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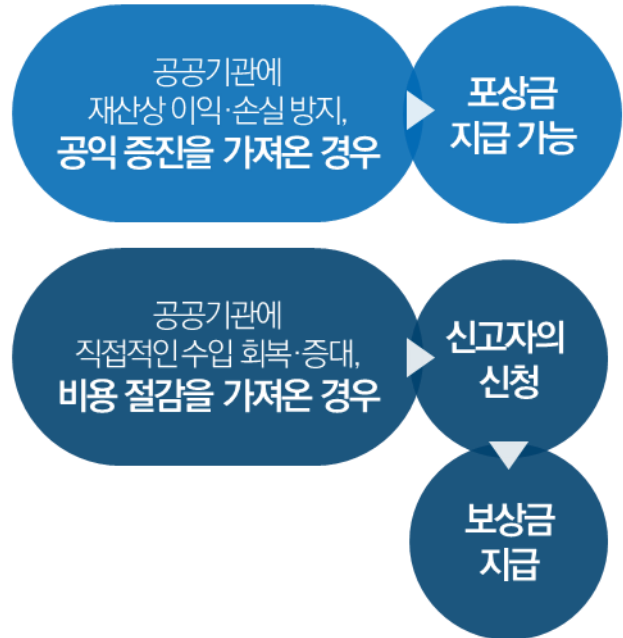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장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신고자 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 행동하는 윤리의식, 사랑받는 청렴농협 ! ”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